

제143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

□ 일시·장소 : '26. 2. 20.(금), 16:00~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(별관 4층)

□ 참석 대상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

○ 해양경찰청 : 기획조정관, 안전 소관 국·과장 등

□ 상정 안건 12건(심의·의결 11건, 보고 1건)

[심의·의결 11건]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부서
1	훈령	「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트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불이익 조치 금지*, 비밀유지**, 재발방지대책*** 등 규정 개선·보완 * 징계, 승진 제한, 전보, 평가 차별,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 ** 사건 처리 관련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가능 단서규정 추가 *** 피해자의 반대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재발방지대책 의무 제출	운영 지원
2	훈령	「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」 전부개정안	• 원적지 관련규정 현행화, 용어 수정 및 위원회 구성 부서 명확화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 △ '원적지' 근거 수정 및 부양가족 정의 추가 등 조문 체계 정비 △ 위원회 사무 추가 △ 거짓 입주시 5년간 제한 규정 마련 등	
일 괄 상 정	3	대령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일부개정안	혁신 행정 법무
	4	부령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
	5	훈령	「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」 일부개정안	
	6	훈령	「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」 일부개정안	
	7	훈령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」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	
			• '26년 정기직제*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 등 사무 추가** 반영 * 특수기록관, 경찰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함정 등 총 93명 증원 ** [구조안전국] '수중레저 안전관리', '사업 등록 및 관리' 사무추가	
			• 조직 신설*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 조정** * 대변인 하부 디지털소통계 폐지 및 디지털소통팀 신설 ** 혁신행정인사 성과급에 관한 사무를 인사운영계에서 혁신성과계로 이관 [국제협력] '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사항, 퇴역함정 해외 양여 사무 등 신설 [수중레저] 수중레저는 레저기획계, 수상레저는 레저안전계 조정 등 [오염예방] 해양오염 취약선박 출입검사, 어구관리 기록 및 신고 등 사무 신설	
			• '본청 각국 및 기관 간' 정원관리 기준 신설 - 본청 각 국간 및 지방청 간 경정 이하 정원 조정은 청장 승인	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부서
일 괄 상 정	8 고시	「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관련 조항과 제출서류를 정비* 하고, 근무지 지정** 및 근무시간 편성 기준*** 완화 * 재공고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→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(유료) →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무료) 등 ** 중복 배치 금지 → 치안수요, 순찰범위 등 고려하여 배치 *** 평일 3시간, 주말 4시간 →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정	해양 안전
	9 고시	「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	•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(별표)을 현행화 - 총 17개소 → 18개소(명칭변경 1, 지정취소 3, 추가지정 4)	
	10 고시	「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	• 용어 정비* 및 자격 인정단체 지정 현황(별표) 현행화** * ISO → 국제표준화기구(ISO) ** (추가지정) 1개소 / 총 33개소 → 34개소	
11	훈령	「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」 폐지안	• 상위법령*과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이 낮고, 해석 혼란 해소 및 수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본 규칙을 폐지 *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», 「형사소송법», 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 등	형사

[보고 1건]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('26~'30)	정보통신